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에이원금융센터(주) 보험대리점
2. 제재조치일 : 2021. 9. 10.(검사서 통보일)
3. 제재조치내용

| 제재대상 | 제재내용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험설계사 | 업무정지 90일 : 1명, 과태료(3,500만원) : 1명 |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
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에이원금융센터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는 2018.3.7. ~ 2019.5.23.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□□□□□□□□(주)의 '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' 등 총 120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30.1백만원)을 에이원자산관리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